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복지정책과

제정 2007 · 7 · 26 조례 제 672호 개정 2009 · 5 · 14 조례 제 764호 일부개정 2013 · 6 · 11 조례 제 983호 일부개정 2014 · 8 · 8 조례 제1046호 일부개정 2014 · 10 · 15 조례 제1070호 일부개정 2015 · 9 · 25 조례 제1164호 일부개정 2017 · 12 · 28 조례 제1369호 일부개정 2018 · 3 · 28 조례 제1384호 일부개정 2019 · 12 · 27 조례 제1560호 일부개정 2021 · 12 · 28 조례 제1797호 일부개정 2022 · 4 · 22 조례 제1830호 일부개정 2025 · 4 · 8 조례 제2219호 일부개정 2025 · 8 · 8 조례 제2260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6·11, 2014·8·8, 2025·4·8〉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및 「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.〈개정 2009·5·14, 2013·6·11, 2025·4·8〉
- **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**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〈개정 2025·4·8〉
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- 2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 -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본인이 사망한 경우, 그 배우자) 또는 단체
 -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 -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
-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-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- 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[전문개정 2022·4·22]
- 제4조(시민의 책무) 모든 시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6·11〉
- 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 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6·11〉
 - 1. 주요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 - 2.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,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 우 실시
 - 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
 - 4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
 - 5.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
 - 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주요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
 - 7.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(도로, 광장, 거리, 공원 등)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
- **제6조(보훈단체 지원)** 시장은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6·11〉
 - 1.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
 - 2. 호국·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
 - 3. 자원봉사사업, 호국안보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- 제6조의2(보훈단체협의회 등) 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단체 간 협력 도모

- 2.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
- 3.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 사업
- 4.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
- 5.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- 6.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
- 7.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③ 협의회의 명칭, 조직,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·9·25]

제7조(복지지원 등)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공원・도로・주차장 등 시가 설치・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
- 2. 생존 독립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실시
- 제8조(수당 등의 지급액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가목과 제2호의 수당은 중복하 여 지급할 수 없다. 〈개정 2021·12·28, 2022·11·11, 2025·4·8, 2025·8·8〉
 - 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 - 가. 보훈명예 수당: 월 13만원
 - 나. 희생 · 공헌자 사망위로금: 20만원
 - 다. 보훈대상자 위문금: 매년 설 및 추석마다 각 7만원
 -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
 - 가. 참전유공자 수당: 월 25만원
 - 나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월 10만원

[전문개정 2019·12·27]

제9조(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)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(사망일)

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9·12·27]

제10조 삭제〈2015·9·25〉

- 제11조(수당 등의 신청) ① 제8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희생·공헌자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6·11, 2014·8·8, 2014·10·15, 2018·3·28, 2019·12·27〉
 - 1.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 : 별지 제1호서식
 - 2. 희생·공헌자 사망위로금 : 별지 제2호서식
 -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별지 제3호서식
 - ②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장은 매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나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6·11, 2014·10·15, 2018·3·28〉
 - ③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6·11, 2014·10·15, 2018·3·28〉
 - ④ 수당 등의 지급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〈신설 2013·6·11, 개정 2014·10·15, 2018·3·28〉

[본조신설 2009·5·14, 제목개정 2013·6·11]

제12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18·3·28〉

「전문개정 2013·6·11〕

제13조(지급방법 및 시기)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지급대상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실명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

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신청한 달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09·5·14]

[전문개정 2019·12·27]

- 제14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시장은 제8조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호의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하여야한다.
 - 1.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・군・구로 전출 시
 - 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때
 -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,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·5·14, 제목개정 2013·6·11]

[전문개정 2019·12·27]

- **제15조(환수조치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6·11, 2014·10·15, 2018·3·28〉
 - 1.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 - 2.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
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
 - ② 환수대상자는 환수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6·11, 2018·3·28〉

「본조신설 2009·5·14]

- 제16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09·5·14]
- 제17조(관계기관 협조요청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.

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「제목개정 2013·6·11〕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09·5·14]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4·8·8〉 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·5·14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9·5·14 조례 제764호〉

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·6·11 조례 제983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·8·8 조례 제104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·10·15 조례 제1070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참전유공자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11조 개정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부칙〈2015・9・25 조례 제116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7·12·28 조례 제136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・3・28 조례 제1384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관련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부칙〈2019·12·27 조례 제1560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기존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한다.

부칙〈2021·12·28 조례 제179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 · 4 · 22 조례 제183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·11·11 조례 제1870호〉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5 · 4 · 8 조례 제221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5 · 8 · 8 조례 제226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호가목 및 제8조제2호가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22·11·11〉

보훈명예·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서						처리기간				
(제11조제1항 관련)						30일				
신청인	성	명					참전		5.25	
	생 년	선 월 일				대상	유공		월남	
						유형	보훈			
	성	별 					명예			
	주	소								
	연	락 처								
.11	- n -		은 행 명 예 금 주			계좌번호				
예 금 계 좌										
「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1항에 따라 서 보훈명예수당(참전유공자수당)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대리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과의 관계:										
이 천	<u> </u>	당 귀 하 							 人ノ	· =
구비서류 1.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.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.		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제1항 및「전자정부법」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및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		
신청인 (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성명) (서명 또는 인)							인)			

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19·12·27〉

보훈등록번호 —								
희생·공헌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								
(제11조제1항 관련)								
보 훈 대상자 .	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		
	주 소							
	사망일자							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		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			
	보훈대상자 와의 관계		지급기관					
「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위와								
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
이 천 시 장 귀하								
구비서류	구비서류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수수료							
2.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								
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 없 음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「전자								
정부법 _ㅣ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								
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
시청인 (서명 또는						[는 인)		

[별지 제3호서식] 〈신설 2018·3·28〉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(제11조제1항 관련)								
사망한 참 전	성	명			생년월일		성별	
삼 신	사망	일자			보훈번호			
신청인	성	명			생년월일			
	주	소	(전화번호 :					
		·기관 ·계좌)						
							조세18	91 44
사망인	· 참전	유공자의	의 배우자	· 복지수낭	지급을 신청	합니다.		
					년	월 일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
신청인과의 관계 :								
이천시장 귀하								
구비스	 류 1.	사망진	 단서 등 시	 사망사실을	확인할 수 있는	- 서류 1부.		
구비서류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확인서(국가보훈처 발행) 1부.							수수료	
3.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 없 음								없 음
4.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「전자정								
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								
록자료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